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법안

1. 인권위원회법(초안), 법안기초위원회
2. '인권위원회법' 시안 요지, 1998.10.20. 법안기초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1999.5.17
4. 국가인권위원회(안) 및 의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 1999.7.30. 조용환 변호사
5.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공대위 논평, 1999.9.21

등록		
	C3-2	28 원

* 이 법안은 공추위 내부토론회 용으로 제작한 초안에 불과한 것이니, 소속단체들은 외부로 절대로 유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인권위원회법(초안)

- 법안기초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2.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3.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 (3) 이 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함은 법 제17조의 신청인, 신청인이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피해자, 피신청인을 말한다.
- (5)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6) 이 법에서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한 국가기관, 법인, 시설,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위

- (1) 위원회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인권위원은 전원 상임으로 한다.

제5조 임명

- (1) 인권위원은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대통령은 인권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청문절차는 국회법 제65조에 의한다.

제6조 인권위원의 자격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권문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신망이 높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3. 인권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 인권위원의 임기 등

- (1) 인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2) 인권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 (1) 위원장은 인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최연장자인 인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신분보장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질병이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0조 겸직 등의 금지

- (1) 인권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기타 보수를 받는 직
- (2)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11조 전체위원회

- (1) 위원회에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를 둔다.
- (2) 전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이전의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소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4.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5. 이 법에서 전체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전체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무처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 조사관과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둔다.

제3장 역할 및 권한

제14조 업무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법령안에 관하여 자문 또는 권고
2.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의견표명 또는 권고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 및 권고
4. 인권침해나 관행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일반기준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여부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
6. 법령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사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 및 권고

8.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작성하는 국가기관에 의견제출 및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기구에 정부보고서와 독립하여 의견제출
9. 인권교육 및 홍보
10.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시찰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12.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관과의 교류·협력
1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의견제출
14. 기타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인권지침의 작성

- (1) 위원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일반기준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등

- (1) 위원회는 매년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3)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제1항,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및 조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심리

제17조 구제신청

- (1) 인권을 침해당한 자 또는 인권침해행위를 알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권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권리의 목적이 재산권 보장에 있는 경우
 2.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 (2)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어 있는 자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금시설 소속의 공무원 및 다수인보호시설 소속의 직원은 그

신청서를 비밀리에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공무원과 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접수증명원을 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의 개시

- (1) 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행위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의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 3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서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5) 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이송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방법

- (1)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물건 등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서류나 물건의 영치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당사자, 관계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
- (2)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서류나 물건에 대한 현지조사와 당사자,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 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이나 직원은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이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로부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의 현지조사가 거부된 경우

(6) 제5항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구금시설 등의 시찰

(1) 위원회는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제19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비밀준수의무

인권위원이나 인권위원이었던 자 및 소속 직원이나 소속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조정

(1) 위원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정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 심리

(1) 위원회는 조사된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증인의 소환 및 선서 후 증언청취
3.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회
4. 기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위원회는 제30조의 의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증인 등의 보호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나 증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5조 제1항의 신청인이나 제24조 제1항 2호의 증인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거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인권위원의 제척 등

(1)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 인권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2) 당사자는 인권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인권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 심리 등의 공개

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심리장소의 질서유지

위원회는 심리장소에 출석하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구제조치

위원회는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우 제30조 제2항의 명령을 의결하기 전에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의 장에게 임시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 (1) 위원회는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있어 그 실시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단
 2. 침해된 권리나 기회의 이용
 3. 장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계획작성 및 실시
 4.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 (3) 제2항에 의한 의결을 받은 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4)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장이 제2항 3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시설,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방법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공무원인 피신청인이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조사 및 심리결과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법령, 제도, 정책,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조사 및 심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제31조 재심리 청구

(1) 다음 각 호의 자는 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자
2. 제30조 제2항에 의한 구제명령을 받은 자
3.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구를 받은 자

(2) 재심리 청구는 그 청구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심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32조 재심리 및 의결

(1) 재심리 및 의결은 전체위원회에서 한다.

(2) 재심리 의결의 내용 및 효력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 재심리 의결에 대한 이의

(1) 제3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재심리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배상금에 증감에 관한 소송일 때에는 위원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5장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제34조 인권단체와 협력

(1)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인권단체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 민간전문가의 채용

-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하여 채용되는 자의 대우 및 보수에 관하여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한 자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 협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비밀준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과태료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위원의 임기

- (1)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 중 4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제1항의 위원의 선출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권위원회법’ 시안 요지

1998. 10. 20.

법안기초소위원회

1. 법안의 명칭, 관할

- * 법안 명칭을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함.
- * 인권법의 내용을 따로 두지 않음.
- * 인권위원회 관할 대상은 인권전반으로 하고 다만,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과의 관할이 충돌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의 예외로 하여 조사 범위를 현실화함.

- 법무부안은 인권침해행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차별행위를 인권침해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의 개념의 혼동과 왜곡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음.

- 차별행위도 인권침해행위를 이루므로 별도로 차별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없음.

- 법무부안을 보완하여 인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인권법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법으로 인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등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후 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개념의 형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인권법의 내용을 따로 두지 않으며, 법안의 명칭을 인권위원회법으로 함.

-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갖되(제2조 제1항 ; 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중심기구임), 다만, 개별구제신청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관할중첩에 따른 관할권의 충돌(법원, 수사기관, 고충처리위, 노동위 등에서 이미 계류되어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하거나 권리의 성격상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심리대상에서 제외(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하여 조사 및 구제업무의 수행범위를 현실화 함.

- 다른 기관과의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 예컨대 여성특위의 경우 여성인권문제를 위원회의 관할대상제외하여 이를 여성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인권의 보편성과 기존의 기관들이 인권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는 아니며 각자 별개의 고유업무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는 포괄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개별사건에서 관할이 중복되는 경우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관할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권법이라는 명칭의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으나(캐나다 Canadian Human Rights Act; 뉴질랜드 Human Rights Act; 인도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차별행위만 열거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는 인권의 정의조항이외에 인권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2. 위 상

*** 대통령소속의 국기기관으로 하고,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

- 인권위를 국기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그 나라의 법, 제도, 정치·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어느 형태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에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임.
- 우리의 법, 제도,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법무부의 특수법인안은 독립성과 실효성보장이 어려움.

* 법무부 법인방안의 문제점

- 인권위는 인적 구성, 활동, 재정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법제도아래에서 법인은 이사회와 주무관청이 있어야 하고, 정부로부터의 예산도 보조금형식으로 받아야 하므로 위원회의 독립성보장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

· 법무부안에 따르면,

- + 위원들의 임명제청권을 이사회가 갖고 있고, 이사회는 4명의 정부차관급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나머지 선임이사의 임명제청권도 법무부장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고, 위원들의 선임절차에서의 투명성보장이나 민주적 구성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위원의 선임과정에서의 정부(특히, 법무부) 및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 위원회의 활동에서도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위원회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고, 사업활동분석을 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에서 예산, 결산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활동의 내용에 개입할 수 있음.

+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주무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주무부서가 그 내역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위원회의 보조금에 대한 사실상의 의견권을 행사함.

· 독립성보장에 장애가 되는 이사회를 폐지하고, 법무부가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인권위에 개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식의 법인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리 정치·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법인의 경우 국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권한행사의 실효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법무부의 법인안은 다소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독립성보장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제도아래에서는 독립성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인권위의 위상이나 권한의 하락만을 초래함.

- 우리의 현실에서는 인권위는 국가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독립성보장 측면에서 소속을 두지 않는 국가기구(예컨대 방송위원회)를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소속을 두지 않는 국가기구의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따라서 대통령 소속(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이 아닌 국가의 원수)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제정·활동 등에서 개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3. 구성 및 조직

- *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최초 위원 중 4인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3년마다 일부 위원의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 위원회는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성하게 함.

-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의 임명방식에 투명성, 민주적 과정이 보장되어야 함.
- 추천제도를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추천위 구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청문절차를 통하여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문방식은 인권위법에서 별도의 청문절차를 둘 수 있으나 국회이외의 별도의 청문주체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의 청문절차를 활용함.
- 위원수를 9인으로 하며, 위원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임으로 하는 대신 임기를 6년으로 하고(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엇갈리게 함), 위원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게 위하여 3년마다 일부의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위원회에 전체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이외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4. 조사 방식

- * 조사의 방식으로 출석요구 · 자료제출요구 · 현지조사권 부여.
- * 조사권 보장을 위하여 현지조사 및 자료제출 불응시에는 압수 · 수색, 출석요구 불응시에는 형벌부과하게 함.

-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 관련 정보, 관련자료, 관련장소 등에 제한없는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특히, 우리의 경우 수사기관 및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인권위 업무의 중요한 일부인데 이들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폐쇄성과 은밀성으로 인하여 강제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조차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하려면 보다 실효성있는 조사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함.
- 법무부안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사권에 여러 제한 규정을 두어 사실상 조사권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음.

- 법무부안 중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방안은 현지조사권을 인정하고,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현지조사권은 조사대상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영장없이도 조사대상시설에 들어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과태료는 부과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태료부과만으로 수사기관, 군부대, 수용시설의 조사를 강제하기에는 역부족임.
- 위원회에 조사거부시 강제적인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임의조사가 가능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강제현지조사를 하는 방안은 위원회에서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위원회에 조사활동을 위한 검사를 두어,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인,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으나 위원회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에 검사를 두어 영장 신청하게 함.
- 스웨덴의 경우 음부즈만이 직접 형사소추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사실상 음부즈만이 형사소추까지 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다만 음부즈만에게 그와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 및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며, 캐나다 및 인도의 경우에도 인권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고 있음.

5. 위원회 의결의 효력

- * 위원회 결정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침해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결정에는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률·제도·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하게 함.
-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의 의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효력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는 인권위의 역할(개별 구제기능의 수행여부 및 구제정도), 구제신청처리구조(심리기능(또는 기구)의 존재여부), 위원회의 의결 내용 및 그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그러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권한이 충분치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있음.

-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법무부안에서의 인권침해행위(수사기관,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침해행위)는 대체로 형사범죄행위이고, 공무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인권위가 권고를 의결하기 전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을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위원회가 권고를 하는 것인데 합의나 조정에서도 수용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권고한다고 하여 당사자(특히, 일반 사인의 경우)가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
-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비추어 권고적 권한만으로는 실효성의 확보가 어려움.
- 침해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의결에 대하여서는 구속력을 부여하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오늘날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간이한 구제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의 전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오히려 이와같은 직접적인 구제의결에 대하여서는 위원회에 구속력있는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신속·간이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는 것임.
- 인권위는 단순히 개별구제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므로 개별구제신청사건을 통하여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인권침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요구권을 부여함.
-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은 전체위원회에서 하며, 재심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함.
-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구제의 경우 인권심리위(Human Rights Tribunal)에서 이를 심리하게 하여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6. 민간단체와의 관계

***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규정**

- 법무부안에서처럼 정부나 인권위가 민간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함.
- 인권위는 민간인권단체와 협력하여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민간인권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99. 5.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말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에 의하여 조사와 처리의 대상이 되는 인권은 그 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국제인권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였거나 가입·비준할 수 있는 국제조약 중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2.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3.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4. 외국인보호시설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④ 이 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시설수용자”라 함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관계기관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자료 등”이라 함은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제출요구, 검증, 감정, 영치의 대상으로 삼는 문서, 자료, 물건 등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함은 법 제34조의 진정한, 진정한이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을 한다.

⑨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및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해 있거나 그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위원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5조 【인권위원의 임명】 ①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위원의 자격】 ①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중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인권위원의 임기】 ①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결석이 되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신분보장】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장기의 질병이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0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인권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수를 받는 직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전체위원회】 ① 위원회에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를 둔다.

② 전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44조에 의한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4. 제62조 제1항에 의한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의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7. 소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 8.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 9. 그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④ 전체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인권위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과 전체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전체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 직제 및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 및 소속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직원의 인사권】 (1) 위원장은 이 법과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배치, 휴직, 면직 또는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2) 위원장은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구분, 직급,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4)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

제18조 【지방사무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사무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인권연구기관】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방안,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연구·조사를 위하여 인권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예산】 ① 위원회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속한 공무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비밀준수의무】 인권위원 또는 인권위원이었던 사람, 조사위원 또는 조사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그밖의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 【업무】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법령안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
2.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4.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의 제시 및 권고
5.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여부 및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6. 인권교육 및 홍보
7.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권고
8.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관과 교류·협력
9. 기타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①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법령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국회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법령안의 내용
2.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 및 그 내용
3.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여부 및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

제25조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작성 지원】 ①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

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상황의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방문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모든 장소와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관계자 또는 시설 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에게 면담이나 진술 또는 서면의 작성사실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내의 일정한 장소 또는 상황에 관하여 검증을 하거나 조사한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등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⑦ 그밖에 이 조에 의한 방문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제2항에 의한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 또는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2항에 의한 관계 기관의 이행내용 또는 이행계획, 제4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한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 【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판단기준, 인권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해야 할 조치의 내용,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인권자료실】 ① 위원회는 그 산하에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 그밖에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재판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 및 조치 사항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보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리

제36조 【진정】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공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공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 【시설수용자의 진정】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은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위원회로부터 그 통보에 대한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를 발급받아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인권위원 또는 공무원의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

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 및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 및 그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6. 진정이 익명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 그 진정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을 받은 기관은 그 진정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9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개시 및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36조에 따라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3.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 관계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조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치한 자료 등의 목록, 그 대상자, 검증 또는 감정을 한 장소, 시설, 자료 등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문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 동거인,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증인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질문, 검사의 절차와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7) 제1항에 의한 검증,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3절, 제5절, 제6절을 준용한다. 다만, 구인에 관한 절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질문권】 (1)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제4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 【인권위원의 제척 등】 ① 인권위원 및 제48조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때
2. 인권위원이 당사자와 호주, 가족,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② 당사자는 인권위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인권

위원을 기피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인권위원은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사건의 조사·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 【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경우
3. 진정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 【조정】 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결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1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절차를 시작한 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3.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4.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조정의 효력】 제46조 제2항에 의한 조정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8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 조정위원 중 3인은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의 위촉,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피해자를 위한 소의 제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필요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의 제기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법률구조】 ① 제46조 제6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4조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법률구조의 절차,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 위원회는 제51조 또는 제52조에 정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임시조치 등】 ① 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또는 감정에 대한 참여
-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당해 직무배제
-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이 장에 의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정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6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과거인권침해조사의 특례

제57조 【과거인권침해의 조사】 (1) 위원회는 {1945.10.9.부터, 1948.8.15.부터, 1960.5.16.부터, 1972.10.16.부터, 1979.12.12.부터} 1998.2.24.까지 공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하 '과거인권침해'라 한다)의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전항에 의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자와 형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정한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행위자의 도피 또는 은닉,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과거인권침해로 본다.

제58조 【진실위원회의 구성】 (1) 과거인권침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과거인권침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진실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진실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진실위원회는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진실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 전항에 정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과거인권침해의 피해자 및 관련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진실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과거인권침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진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자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 【조사위원의 임명】 ① 조사위원 중 2인은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고, 6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인권위원이 아닌 조사위원은 과거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그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중 3인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1조 【조사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1) 인권위원이 아닌 조사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정한 진실위원회의 업무를 마칠 때까지로 한다.

(2) 인권위원이 아닌 조사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의 질병 또는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제10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준용한다.

제62조 【진실위원회의 업무】 (1) 진실위원회는 과거인권침해의 진상과 피해자의 피해상황, 과거인권침해의 발생에 기여한 제반상황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진실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6월, 2년} 동안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에 한하여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진실위원회의 권한】 (1) 진실위원회는 이 장에 정한 과거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범위안에서 이 법에 정한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진실위원회는 과거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거인권침해와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이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거나 과거인권침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3) 제4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진실위원회 조사의 비공개】 (1) 이 법에 따라 진실위원회가 한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는 자료 등은 진실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 【관계자의 의견제출】 (1) 과거인권침해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그 조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로 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진실위원회는 위원회는 제67조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과거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진실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그 관계자가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증인 등의 보호】 (1)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진실위원회에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그 진술이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과거인권침해행위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진실위원회는 과거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 【보고서】 (1) 위원회는 진실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 1개월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거인권침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과거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된 원인
4. 과거인권침해를 예방하지 못한, 또는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5. 과거인권침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6. 과거인권침해를 막거나 예방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이 한 노력의 내용과 성과
7.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과거인권침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8. 진실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과거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과거인권침해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과거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4)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8조 [과거인권침해의 특별사면] (1) 진실위원회는 진실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과거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힌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사면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상자의 과거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과거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9조 [위원회의 규칙] 이 장에 정한 사항외에 진실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조사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70조 [위원회의 책임면제] 위원회, 인권위원, 조사위원, 위원회의 공무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 및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2조 [관련기관 등 및 민간단체와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관련기관 등 및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등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73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벌칙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의 작성·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
2. 제27조, 제41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41조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4.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에 위반한 자
2.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7조 제3항에 위반한 자
4.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5. 제54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의 요구를 거부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한 자

제75조 【허위진정의 죄】 (1) 제36조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 제6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자

② 제73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이 조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이 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그 결정문을 법무부장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

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7조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 또는 징계요구에 관하여는 제51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인권위원의 임기】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임명되는 인권위원 중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임명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에 제4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 3 [인권특별위원회] (1)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권특별위원회를 둔다. (2) 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인권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② 국회법 제1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총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의 보고】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직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예상되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사무처의 조직, 예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는 제5장에 정한 과거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진실위원회 조사업무의 시작】 제62조 제2항의 진실위원회가 “조사업무를 시작한 날”이라 함은 진실위원회가 과거인권침해의 진상조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날을 말한다.

제6조 【과거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이 법에 의하여 진실위원회가 조사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진실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과거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md/nhri;9401)

* 이 자료는 검토를 위한 초안이므로 공대위 외부에 공개하지 말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DUKSU LAW OFFICES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동 327-2 금호팰레스빌딩 5층, 전화: (02) 567-2316, 팩스: (02) 568-3439
5th FL, Kumho Palace Bldg., 327-2 Changsin-1-Dong, Chongno-Ku, Seoul, Korea, TEL: (822) 567-2316, FAX: (822) 568-3439

1999. 7. 30.

수신: 김성재 수석비서관님

참조: 임삼진 국장님

발신: 변호사 조용환

참고수신: 공대위 곽노현 교수님/ 서준식 대표님/ 배경내씨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및 의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 송부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새로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참조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의문사특별법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만을 간략히 지적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조사와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인권은 그 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국제인권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였거나 가입·비준할 수 있는 국제조약 중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2.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3.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헌병대에 설치된 영창
4. 외국인보호시설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④ 이 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시설수용자”라 함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관계기관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자료 등”이라 함은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제출요구, 검증, 감정, 영치의 대상으로 삼는 문서, 자료, 물건 등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함은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한 진정인,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을 한다.

⑨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자료 등, 장소 또는 시설 등을 알고 있거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해 있거나 그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인권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위원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위원 중 6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5조 【인권위원의 임명】 ① 인권위원 중 5인은 대통령이,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의 임명·추천에는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위원의 자격】 ①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추천한다.

② 대통령과 국회는 임명 또는 추천하는 인권위원 중 여성을 각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각 3인의 상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상임 인권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권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인권위원의 임기】 ①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